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04·12·13 조례 제 520호
 개정 2009·12·29 조례 제 816호
 일부개정 2014·4·10 조례 제1034호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3·28 조례 제1385호
 일부개정 2018·5·18 조례 제1398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2·28 조례 제1582호
 일부개정 2020·6·30 조례 제1607호
 일부개정 2026·2·27 조례 제23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4·4·10, 2018·3·28, 2020·2·28, 2020·6·30, 2026·2·27>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원·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

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葬事)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의2. “부부유골”이란 「민법」에 따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거나 합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부부장지”란 부부유골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장지를 말한다.

7.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8.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탑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의2.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4·4·10>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4·4·10>

1.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4·4·1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③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목개정 2014·4·10]

제2장 묘지·봉안시설 <개정 2009·12·29>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2014·4·10, 2018·3·28>

② 삭제 <2018·3·28>

[제목개정 2009·12·29]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4·4·10>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 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2014·4·10>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공원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8·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4·10, 2017·9·29, 2018·3·28, 2020·6·30, 2026·2·27>

1. 배우자 중의 1명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하는 사람

이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의2. 이천시 명예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5. 사망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13조의2(합장의 허용) ① 공설장사시설의 합장은 다음 각목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가. 당초부터 부부단, 부부장지를 선택하여 사용 신고한 경우

나. 부부 중 1명이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합장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14조(묘지의 면적 제한) 공설장사시설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5·18]

제15조(분묘 등의 설치)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09·12·29, 개정 2020·2·28, 단서삭제 2026·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20·6·30>

③ 시장은 사용의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개정 2020·2·28>

제16조의2(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 30년(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2. 공설봉안시설 : 15년(1회에 15년, 3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3. 공설자연장지 : 50년(연장불가)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제13조의2에 따른 합장의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안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2·27>

1. 최초 안치일부터 50년
2. 합장일부터 30년

③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2·27>

1. 공설공원묘지 분묘는 법 제20조, 영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2.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17조(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8·3·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무연고 행여사망자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 및 사실상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고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8·3·28, 2019·12·27>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제20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제21조(사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4·10, 2020·2·28,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22조(사용의 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4·10, 2020·2·28>

1. 사용의 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1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28, 2020·6·30>

③ 삭제 <2020·6·30>

[제목개정 2020·2·28]

제23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제24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 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천시 명예시민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8·3·28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0·2·28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0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공설자연장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2·27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2. 28>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1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공원묘지	백사공설공원묘지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산99-1·산99-3번지	
	대월공설공원묘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산107-1번지	
	설성공설공원묘지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82-2번지	
	장호원공설공원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방추리 산64-7번지	
공설공동묘지	어석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산119-1·산119-5번지	
	방추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방추리 산90번지	
	선읍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72번지	
	송산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산93-2번지	
	노탑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산32번지	
	이항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이항리 산43-1·산60번지	
	와현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산148-1번지	
	진암리 공동묘지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37번지	
	죽당리 공동묘지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71-1·산71-3번지·산71-9	
	송온리 공동묘지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산29-1번지	
	수광리 공동묘지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589-2번지	
	도립리 공동묘지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1·3·4·5·6·7번지	
	내촌리 공동묘지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산7-1번지	
	후안리 공동묘지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산36	
	장암리 공동묘지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84-1번지	
	이치리 공동묘지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산88번지	
	각평리 공동묘지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산1번지	
	대대리 공동묘지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산119-1·산119-4번지	
	원두리 공동묘지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산25-1·산25-2·25-5·산26-1번지	
	진가리 공동묘지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산120-1·산121번지	
	대죽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68-1번지	
	암산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 산39번지	
	상봉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산83번지	
	행죽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산110-4·산110-3번지	
	송계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산50번지	
	자석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61번지	
	장천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산33번지	
	신필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62-1·산62-5번지	
	제요리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산56-1·산56-4번지	
	월포리 공동묘지	이천시 울면 월포리 산43·산102-1번지	
	신추리 공동묘지	이천시 울면 신추리 산75번지	
	산양리 공동묘지	이천시 울면 산양리 산60번지	
	산성리 공동묘지	이천시 울면 산성리 산52번지	
	오성리 공동묘지	이천시 울면 오성리 산174번지	
공설봉안시설	추모의 집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53번길 159	
공설자연장지	이천시립 자연장지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71-9	

[별표 2] <개정 2026. 2. 27>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제16조 및 제16조의2 관련)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원)						비 고	
	면적 등 기준		최초 사용기간	최초사용 시				연장시 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비		
공 설 공 원 지 묘 지	1기당	6.6㎡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가능)	900,000	400,000	500,000	기존 금액	인건비, 비석설치, 잔디시공 사용자부담
공 설 공 동 지 묘 지				50,000	50,000	-	무료	
공 설 공 봉 시 안 설 (추모의집)	유연 유골	봉안 1구	15년 (1회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50,000	100,000	250,000	기존 금액	
		부부단 2구		600,000	200,000	400,000		
	무연유골 봉안 1구		5년	50,000	50,000	-		
공 설 자 연 지 장 지 (이천시립 자연장지)	유연 유골	개인장지 (50x50cm)	50년 (연장불가)	300,000	100,000	200,000	표지석시공 사용자부담	
		부부장지 (80x50cm)		510,000	170,000	340,000		